

APEC ENGINEER 윤리강령

The Code of Ethics for APEC Engineer



글 / 白伊鎬

(Baik, Ee Ho)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연구위원.
E-mail: ehbaik@shinbiro.com

Korea APEC ENGINEER Monitoring Committee had announced the Code of Ethics for APEC ENGINEER in Oct. 1999.

Korea APEC ENGINEER REGISTER had included the ethical model of APEC ENGINEER as required essential subject to be lectured for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code of ethic is necessary for the benefit of the engineers themselves.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code of ethics and Australian code of ethics shows that Australian gives more points to the Engineer's rol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ublic.

Korea has too many laws regulating the engineers' practice, which can be handled by the code of ethics. From now on, we, engineers should pay more attentions to the code of engineer's ethics and establish new and best model of ethics by enough discussion.

1. 시작하는 말

1999년 10월 한국 APEC ENGINEER 모니터링위원회는 APEC ENGINEER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당장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APEC ENGINEER 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지만, 차제에 한국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APEC ENGINEER는 이제까지의 다른 기술자보다는 훨씬 윤리적으로 신뢰받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한국 및 외국 기술사의 윤리강령을 근거로 기초한 것으로서 APEC ENGINEER 전문위원회에서 그 문구 하나 하나가 논의 결정되고 모니터링위원회에서 다소의 수정을 거쳐 제정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대학의 공학교육과정에 기술사의 윤리에 관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사회나 관련학회에서도 이 윤리강령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APEC ENGINEER를 선발하기 위한 심사등록규정에서 계속교육의 필수교육과목으로 APEC ENGINEER 윤리규범을 포함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많은 모니터링위원회위원들이 새롭게 선발하는 APEC ENGINEER들에게만 확고한 윤리의식을 심어 주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강조한 결과이다.

2. 윤리강령의 역할

윤리강령의 제정 선포와 윤리규범을 계속교육의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니터링위원회 위원들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우선 현재 외국에서 윤리강령을 강조하기가 우리도 본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이고, 특히 한국의 초기 APEC ENGINEER는 건설관련 기술자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건설기술자와 관련된 부실공사, 부정부패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건설기술자의 사회적 신뢰도가 형편없이 추락되어 있는 만큼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고 윤리규범을 성문화하여서 시행하여 기술자들에 대한 국민과 외국인의 부정적인 시각을 변화시키고, 실제로도 과거의 옳지 못했던 행위를 바로잡아서, 이제부터 새롭게 탄생되는 APEC ENGINEER는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하자는 소박한 소망을 담고 있다.

물론 소수이지만 일부 위원들은 윤리는 자신의 양심에 의한 행동에 관한 것이며, 윤리규범에 의해 판결한다는 것은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법의 문제이고 더구나 교육으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회의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윤리규범이라고 하면 첫 느낌은 기술자를 얽어매고 자유를 속박하는 불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윤리강령이나 윤리규범이야말로 기술자를 위하여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윤리강령은 단순히 사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는 약속 내지는 엔지니어의 사명을 밝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기술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자를 고용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찾아내어 사회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즉 고용주가 의뢰하는 것이 부당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엔지니어 윤리강령은 엔지니어의 책임에 관한 집단적 인식이다.

윤리강령이 명확한 형태로 성문화된 경우 윤리규범으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성문화된 윤리강령은 회의나 교육에서 기술자들의 토론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윤리강령은 소송에서 법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윤리강령은 동료기술자 혹은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압력에 대응하는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윤리적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세부사항을 예시한 윤리규범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동료 기술자들이 경험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윤리적인 시행착오나 과도한 정신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관해 분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효과는 결과적으로 우리 전문기술자 집단(예를 들면 APEC ENGINEER집단)의 사회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다른 집단에 대하여 우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호주윤리강령과의 비교

한국 APEC ENGINEER의 윤리강령과 호주 APEC ENGINEER의 윤리강령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 APEC ENGINEER 윤리강령

APEC ENGINEER는 그 사명과 국제적인 지위 및 책임을 자각하여 APEC ENGINEER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품위보전과 유지

APEC ENGINEER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향상에 노력하고 품위보전과 유지를 위하여 힘쓰

며, 항상 기술에 관한 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전문기술자로서의 자세

APEC ENGINEER는 항상 기술적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동료 APEC ENGINEER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자기 전문분야 이외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실의 의무

APEC ENGINEER는 자기의 기술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의뢰자와 계약체결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업무 수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기술업무에 대하여는 의뢰자로부터 지불되는 정당한 보수 이외의 다른 것은 일체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의 유지

APEC ENGINEER는 항상 의뢰자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APEC ENGINEER는 의뢰자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솔선하여 다른 분야의 전문가 또는 특수분야의 기술자와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호주 APEC ENGINEER 윤리강령

1. 지역공동체의 복지,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항상 자기개인이나 동료회원에 대한 책임에 우선하여야 한다.
2. 지역공동체의 신뢰 및 회원과 전문직의 명

예, 성실 및 권위를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3. 전문능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용역을 제의, 자문 또는 업무를 담당하며, 신중하고 근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의뢰자, 고용자 또는 동료를 포함한 지역공동체를 위해 공평, 정직,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5. 지역공동체의 복지, 건강 및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고용자 또는 의뢰자의 성실한 대리인 및 자문자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기술과 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관련된 행위나 업무로 인한 사회적 환경영향에 대하여 동료, 의뢰자, 고용자 및 지역공동체에게 알리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평성, 정직성 및 적합한 지식에 근거한 의견의 공표 또는 증거제시를 하여야 한다
8. 일생동안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동료들을 동일한 방향으로 지원하고, 고취하여야 한다
9. 본 강령을 어기는 일을 지원하거나, 중용하거나 또는 가담하지 않으며, 이 강령을 지지하는 이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APEC ENGINEER 윤리강령은 기존의 한국기술사 윤리강령과 그 문구는 동일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APEC ENGINEER 윤리강령은 미국 기술사회 및 호주기술사회 윤리강령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의 것과 비교할 때, 지역공동체의 복지, 건강 및 안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대중에게 업무내용을 공표 하는 일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즉 우리 윤리강령은 아직도 기술사집단 내부의 문제 또는 고용주와의 문제에 집착하는 반면에 외

국에서는 전문가 집단 자체내의 문제나 고용주와의 관계이상으로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다.

4. 윤리강령과 윤리규범 및 처벌법 관계

한국기술사회나 호주 APEC ENGINEER의 경우 윤리강령을 어기면 그에 상응한 징계규정이 있다. 대부분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의 징계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기술사회에서 실제로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징계한 예가 없고 더구나 이러한 주체가 공론화 되어 토의된 적도 없기 때문에 소속기술사들은 이 징계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느낌이 결여되어 있다 하겠다.

반면에 건설기술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측량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윤리규범과 관련된 자체 징계규정으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 것들까지 처벌법규에 포함시켜 윤리규범과 징계규정의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열거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는 시공기술자, 감리원, 설계자, 측량사, 건축사, 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등으로 구분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위반 내용을 열거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

부실시공, 부실자재, 부실설계, 부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신기술 및 신공법을 잘 못 적용하여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공법을 도입한 설계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건설기술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기술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주로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업무에 관한 비밀 누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기술사사무소의 휴폐업에 관한 것, 허위서명, 교육훈련 미필에 관한 것들이고, 기타 사항으로서 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측량성과조작, 하도급 법 위반 등의 경우이다.

벌칙을 보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이 대부분으로서 기술사회 등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윤리규범위반자에 대한 징계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망라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후 관련 기술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 등을 처벌하여야 마땅함에도 여론 무마용으로 우선 관련 기술자를 구속해 놓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되는 사회풍토이다.

5.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PEC ENGINEER 윤리강령의 제정과 윤리규범의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기술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윤리규범 교육이 잘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굳이 모 국회의원처럼 기술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사형까지 시켜야 된다는 극단적인 입법추진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전문가 직업윤리는 생활윤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호주나 미국 등은 기독교적 윤리관에 근거한 생활윤리가 확립되어 있

는 반면, 우리의 경우 유교적 생활윤리가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직업윤리도 이러한 생활윤리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급속하게 밀물 듯이 밀려오는 국제화추세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윤리와 함께 전문가적 직업윤리규범을 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과거의 유교적 윤리규범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새로운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참다운 윤리규범으로 변환시켜야 되는 것이다.

참다운 우리의 윤리규범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서 확립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과거의 윤리관과 새로운 윤리관이 혼재된 상황 하에서는 각자 당면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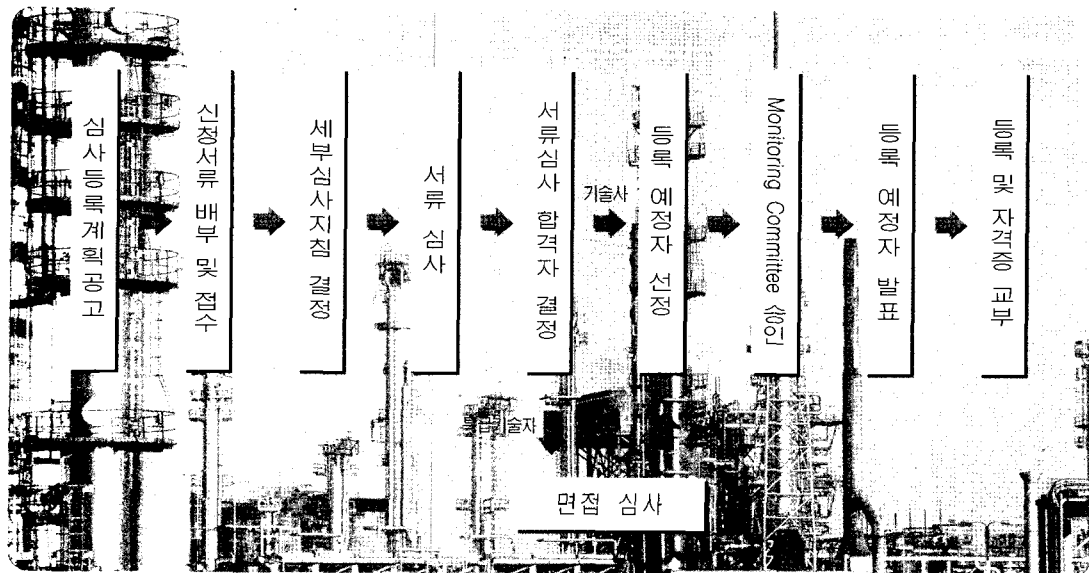
윤리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술자들의 역량이 집결될 수가 없고 그 힘이 분산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의식 있는 기술자들은 마땅히 새롭고 참다운 기술자 윤리규범의 확립에 적극 참여하여야 된다고 필자가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고 접수일 2001. 1. 5)

참고 문헌

1. THE APEC ENGINEER MANUAL
2. HANDBOOK FOR APEC ENGINEER REGISTRATION, AUSTRALIA
3. 한국 APEC ENGINEER 윤리강령
4. 엔지니어 윤리학(이태식, 위성륜, 송옥환)



APEC ENGINEER 심사등록절차